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 2. 7.		16	2017. 3. 21.	
2	2012. 2. 20.		17	2017. 11. 29.	
3	2012. 9. 7.		18	2018. 3. 12.	
4	2012. 11. 21.		19	2018. 11. 14.	
5	2013. 5. 15.		20	2019. 1. 2.	
6	2013. 11. 13.		21		
7	2014. 2. 24.		22		
8	2014. 5. 22.		23		
9	2014. 9. 17.		24		
10	2015. 3. 1.		25		
11	2015. 12. 11.		26		
12	2016. 5. 19.		27		
13	2016. 9. 29.		28		
14	2016. 12. 2.		29		
15	2017. 2. 22.		30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한국항공대학교(Korea Aerospace University)는 항공우주과학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공과대학, 항공·경영대학(이하 “항공대학”이라 한다), 인문자연학부 및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하며 학부, 학과(모집단위)와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0., 2017.11.29.>
- ② 교양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인문자연학부를 두며, 연계/융합 전공 교육을 위하여 공과대학에 공학융합학부를, 항공대학에 항공·경영융합학부를 둔다. <개정 2017.3.21., 2018.11.14.>
- ③ 삭제 <2007.9.1.>
- ④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 항공·경영대학원을 두며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항 신설 2012.2.20.>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3조 (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 신입생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개정 2018.3.12.>
- ② 본 대학교 편입생의 수업연한은 잔여학기로 한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6.9.29.]
- 제4조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9.>
- ② 삭제 <2016.9.29.>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5조 (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단, 제2학기 수업은 1주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

할 수 있다. <개정 2014.2.24.>

제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24., 2017.11.29.>

②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제7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6월 16일), 일요일, 국정공휴일로 한다. <개정 2012.2.20.>

② 졸업식, 입학시험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전 항의 휴업일 이외에도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 4 장 입 학

제8조 (입학구분 및 시기) ① 입학은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으로 구분한다. <항 신설 2012.2.20.>

②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도 초 수업개시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및 외국인 유학생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 초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9조 (신입학 자격) ①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는 전 항의 조건과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2.20.>

제10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2.20.>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0.>

1.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호 신설 2012.2.20.>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호 신설 2012.2.20.>
3. 전 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호 신설 2012.2.20.>

③ 편입학생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 2학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7.9.1, 2012.2.20., 2014.5.22.>

④ 삭제 <2012.2.20.>

⑤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3학년에 편입학(이를 ‘학사편입학’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⑥ 삭제 <2014.5.22.>

제11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려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② 제43조 제3호 해당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2.2.20.>

③ 삭제

④ 삭제 <2007.9.1.>

⑤ 제43조 제6호 내지 제7호 해당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7.9.1., 개정 2012.2.20.>

제12조 (입학지원 서류) 본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모집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1. 삭제 <2012.2.20.>

2. 삭제 <2012.2.20.>

3. 삭제 <2012.2.20.>

제13조 (선 발) ①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내신)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2.2.20.>

② 전 항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여부는 그 시기마다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0.>

제14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시요강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제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전 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보증인) ① 삭제 <2012.2.20.>

② 삭제 <2012.2.20.>

제 5 장 등록, 교과이수 및 졸업

제16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하는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은 소정의 수강정정기간 외에는 학기 도중에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취소는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교과편성)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필요할 경우 필수와 선택을 혼합한 선택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제3항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및 제4항의 국제

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구분 표시는 위의 기본 교과구분 표시에 병기한다. <개정 2008.2.11., 2010.7.1., 2012.2.20., 2018.3.12.>

②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7.1.>

④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에 관한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2.11., 2010.7.1.>

제19조 (교양과목) 교양과목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제20조 (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하위 학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최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21조 (학 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 실험, 실기, 체육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4.2.24., 2017.11.29.>

제22조 (학기당 학점) 학생은 매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1., 2012.2.20., 2016.9.29.>

제23조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학년 33학점 이상 <개정 2015.3.1.>
2. 제2학년 65학점 이상 <개정 2015.3.1.>
3. 제3학년 98학점 이상 <개정 2015.3.1.>
4. 제4학년 130학점 이상 <개정 2015.3.1.>

제24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 전 학력을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25조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 ① 교과목 성적이 불량하여 학점 재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재수 또는 과목재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기재수 및 과목재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제26조 (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이며,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은 2.00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2015.3.1.>

②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졸업학점 및 이수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르며,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이수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③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의 전공학점은 해당 학부(과)별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내규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1., 개정 2010.7.1.>

제27조 삭제

제27조의2 (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의 학점이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3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12.2.20.>

제27조의4 (학군 제휴)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해 군 간부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군간 학문교류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제27조의5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제 등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4.]

제28조 (졸업 및 학위) ①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양식에 의거 <별표 2>로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2.20.>

② 전 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자는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11.>

③ 졸업대상자 결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장이 결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1., 2012.2.20., 2015.3.1.>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과정에서 소정 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한 전공에 따라 <별표 3>으로 정한 전공을 명기하고, 이를 학위증에 표기한다. <개정 2010.7.1., 2012.2.20.>

⑥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한 전공에 따라 <별표 4>로 정한 전공을 명기하고, 이를 학위증에 표기한다. <신설 2008.2.11., 개정 2012.2.20.>

제28조의2 (조기졸업) ①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업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는 제3조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②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제29조 (학점 및 학위수여의 취소) ①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②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해당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1.>

제 6 장 시험과 성적

제30조 (시험과 출석) ①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 중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삭제

제31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과 출석 및 과제 등 평소성적을 종합 평가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한다. 단, 상대평가에 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등 급	실 점	평 점
A ⁺	95~100	4.5
A ^o	90~94	4.0
B ⁺	85~89	3.5
B ^o	80~84	3.0
C ⁺	75~79	2.5
C ^o	70~74	2.0
D ⁺	65~69	1.5
D ^o	60~64	1.0
F	0~59	0.0

② 전 항의 성적 등급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 <항 신설 2012.2.20., 개정 2014.5.22.>

1. P(Pass), NP(No Pass) : 합격(Pass), 불합격(No Pass)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평가 기호 <호 신설 2014.5.22.>

2. R(Retake) : 과목재수로 학점을 재취득하는 경우 기존성적을 대체하는 평가기 호로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호 신설 2014.5.22.>

제32조 (학점인정) ① D^o급 이상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성적을 인정하고 해당학점을 부여한다.

② 성적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해 학위를 취득할 경우 협약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2015.3.1.>

⑤ 현장실습,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에 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29., 개정 2018.11.14.>

제33조 (성적경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한다.

1. 당해 학기성적 평점 평균 1.80미만 자

2. 삭제

3. 삭제

② 전 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미 받은 성적경고 기록은 추후 과목재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제34조 (재시험)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o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o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전과 및 전공

제36조 (전 과) ①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25%까지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단, 학사구조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2018.3.12.>

② 전과에 대한 자격, 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제36조의2 (학부(과) 전공) ① 학부(과)로 입학한 학생은 <별표 2>에 따른 소속된 학부(과)의 전공분야 중 필히 하나의 주전공(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을 선택·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자유전공학부는 별도로 정한다.

② 학부(과)의 전공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2.]

제37조 (부전공)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38조 (복수전공) ①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입학정원 내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3.12.]

제38조의2 삭제 <2018.3.12.>

제38조의3 (연계·융합전공) ① 1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전공과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융합전공을 둔다. <개정 2018.3.12.>

② 제1전공 이수 중 제2전공으로 연계/융합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 신설 2018.3.12.>

③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2.>

[본조신설 2015.12.11.]

제 8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 제39조 (휴 학)** ① 질병, 군복무, 창업, 육아(임신·출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4주 이상 계속 수학을 수 없을 경우,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2016.12.2., 2018.11.14.>
- ② 재학생으로서 법정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을 시킬 수 있다.
- 제40조 (휴학의 제한)**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 학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4년(8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7.9.1.>
- ② 휴학 사유가 질병, 군복무, 창업 또는 육아인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6.12.2., 2018.11.14.>
- ③ 삭제 <2018.11.14.>
- 제41조 (복 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 ②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해당학기에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 ③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전입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7.1.>
- ④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전공으로 복학하는 학생의 복학 절차는 해당 학부(과) 국제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내규에 의한다. <신설 2008.2.11., 개정 2010.7.1.>
- 제42조 (자 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 제43조 (제 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해당학기 수업개시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타교에 적을 둔 자
 4. 장기간 무단결석한 자 <개정 2018.3.12.>
 5.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6. 자퇴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리된 자 <개정 2012.2.20.>
 7.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8. 전 7호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첫 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07.9.1.>

제 9 장 학생활동

- 제44조 (총학생회)** ① 학생은 총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총학생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45조 (회 비) 삭제**
- 제46조 (조직신고)**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7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지도교수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48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및 연구활동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9조 삭제**
- 제50조 (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포상과 징계

- 제51조 (포 상)**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 제52조 (징 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1. 삭제 <2012.2.20.>
 2. 삭제
 3. 삭제 <2012.2.20.>
 4. 삭제

제 11 장 직제 및 부속기관

- 제53조 (직 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3조의2 (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7.9.1.>
- 제53조의3 (학교기업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명,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시설, 학교기업의 현

장실습 활용 및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53조의4 (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 학교기업에서는 학생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2.24., 2017.11.29.>

③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관한 상세사항은 해당 학부(과) 내규에 따른다.

제53조의5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4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학교기업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교기업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기업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12.2.20.>

제55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를 둔다.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9.1., 2008.10.1., 2009.7.1., 2012.3.29., 2013.5.15., 2013.11.13., 2014.5.22., 2015.12.11., 2018.3.12.>

② 부속기관과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개정 2013.5.15., 2014.5.22., 2015.12.11., 2018.3.12.>

제55조의2 (학군단) ① 본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을 둘 수 있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 12 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제56조 (교수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2.7.>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평의회 회원 선출을 위한 교수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12.2.20.>

제57조 (교수회의 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삭제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

② 전 항의 심의 사항 중 사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심의 결과는 추후 교수회에 보고한다.

③ 삭제

제58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08.10.1.>

제58조의2 (학칙개정절차)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 2012.2.20.>

1. 학칙 개정안 작성 및 공고

교무처장은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에 사전 공고하며, 그 결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한다.

2. 심의 및 공포

교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대학평의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안을 공포한다.

[본조신설 2008.10.1.]

제58조의3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 13 장 등록금 <개정 2014.2.24.>

제59조 (등록금의 납부)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4.>

제60조 (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 ① 등록금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2.11., 2012.2.20., 2014.2.24., 2018.3.12.>

② 삭제 <2014.2.24.>

제60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등록금 책정 심의 및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24.>

②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동문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3/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2.20., 2014.2.24.>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2.24., 2018.3.12.>

[본조신설 2011.2.7.]

제 14 장 장학금

제61조 (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금의 수혜 학생이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5 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63조 (위탁생) 정부 및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라도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18.3.12.>

제64조 (입학정원 외 입학) 입학 정원 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학년도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07.9.1.>

제64조의2 (외국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의거 외국인의 경우는 신입학 또는 2, 3학년에 정원 외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2014.9.17.>

② 외국인 입학에 대한 신입학 또는 편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0.]

제65조 (학칙의 준용) 위탁생 및 특례입학 학생에게는 따로 정하는 규정 이외에는 학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0.>

제65조의2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3.12.>

[본조신설 2012.4.1.]

제 16 장 계절수업 및 공개강좌

제66조 (계절수업) ①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매 계절 학기는 학기 당 3주 이상의 수업을 과하여야 하고, 학기 당 7학점 이

내로 한다. <개정 2007.9.1., 2010.7.1.>

제67조 (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능력의 습득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68조 (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4., 2017.11.29.>

②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및 초빙교수 등의 교수시간은 자격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9.>

제69조 (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매 학기별 신입생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3.12.>

제 17 장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70조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2.>

② 삭제 <2014.5.22.>

제71조 삭제 <2014.5.22.>

제72조 삭제 <2014.5.22.>

제 18 장 계약학과

제73조 (설 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위탁단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74조 (명칭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명칭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0.>

제75조 (교과과정)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위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 (지원 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

16조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0.>

제77조 (등록금)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록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24.>

제78조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 학생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2.2.20.>

제79조 (설치 운영기간)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제80조 (학사제도 적용)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교류, 유급 등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제81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3.12.>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인가 당시 국립한국항공대학의 학과별 재적학생은 본 대학해당 학년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학칙 인가 당시 국립한국항공대학의 학적 기타 학생신분에 관한 부칙은 본 대학에서 인수 관리한다.
4. 이 학칙 제34조(졸업학점)의 규정은 197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7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국립한국항공대의 학칙을 적용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197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1975년 4월 학칙 제60조 및 제61조의 의거 제적된 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1학년도까지 학장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7.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198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1981학년도 이후의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복학, 재입학, 편입 및 유급하는 자의 졸업학점은 따로 정하며, 학칙 제30조의 제1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에 관여하는 이 개정 학칙에 의한다.
11.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12.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17.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경과조치) ①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대상자 중 졸업정원에 초과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졸업 자격고사에 합격되어야 졸업을 인정한다.
② 대학졸업 자격고사 실시에 따른 방법은 이를 따로 정한다.
19. 이 개정 학칙은 199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3.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복수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명칭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이학계열 항공관리학과 및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전에 이학계열 항공관리학과 및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5학년도 이후 학과명칭 및 계열이 변경된 이학계열 항공교통학과 및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명칭 및 계열을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5.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는 구 학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경영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96학년도 이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영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 명칭을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0년 3월 1일 학부제 시행 이외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은 1999년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①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부터 항공우주법학과를 야간에서 주

간으로 개편하고 2004학년도 이후 항공우주법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주간 학생으로 본다.

3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부터 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를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5학년도 이후 학부명칭이 변경된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제53조의3, 53조의4, 53조의5의 학교기업설치에 따른 학칙 개정
38.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여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부터 항공운항학과 수여학위종별을 공학사에서 이학사로 변경하고 2005학년도 입학생과 동일 학년 이하로 항공운항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개정된 학칙을 적용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학인증 일반프로그램과 공학인증 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학칙 제73조 내지 제81조의 계약학과 운영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제38조의 2 제1항의 학부전공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경영학과야간 및 영어학과야간을 주간으로 개편하고 2008학년도 이후에 경영학과 또는 영어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주간 학생으로 본다.
 ③ (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11조 제5항은 2008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대상부터 적용한다.
4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항공교육인증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3조 8호는 2007학년도 9월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학부 통합 후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항공교통물류학과와 항공우주법학과를 학부로 통합하며, 통합된 학부의 명칭을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로 한다.

-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이학계열 항공교통물류학부 또는 사회계열 항공우주법학과에 입학한 자는 해당학부(과)의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교통물류학부 또는 항공우주법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 통합된 이학계열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부명칭 및 계열을 적용한다.
- ④ 학칙 제22조는 200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부터 항공우주기계공학 프로그램은 항공우주공학 프로그램으로 변경운영하고, 기계공학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③ (경과조치) 항공교통물류학부(항공교통전공, 교통시스템전공, 교통융합전공, 물류관리전공)로 졸업하는 자는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항공우주법학과로 졸업하는 자는 법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1조 제1항의 재입학 1회 제한은 2012학년도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신입생과 편입생은 종전과 동일하게 학칙 제4조의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5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제1항제2호는 2012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5조의 2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①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의 “물류관리전공” 과 “교통융합전공” 은 2013년 3월 1일부터 “물류전공” 으로 통합·적용된다.
- ② “물류전공” 통합 이전 “물류관리전공” 또는 “교통융합전공” 을 이미 배정받은 자는 2014년 8월 졸업자까지만 통합이전 전공명칭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단, 휴·복학 등의 사유로 재학연한이 늘어난 자는 통합된 전공명칭을 따른다.
5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부 분리·신설 후 학부(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는 항공전자정보공학부와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리·신설된다.
-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자는 해당학부의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 전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자로서 2015학년도 이후 항공전자정보공학부 또는 소프트웨어학과에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원에 의거 분리·신설된 학부(과)의 학적을 적용한다.
5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1조, 제53조의 4제2항, 제68조제1항은 수업일수가 매 학년 32주 이상(매 학기 16주 이상)으로 조정되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③ (대학등록금운영관한규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5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성적평가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55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에 따른 경과조치) 제70조 내지 제72조는 2014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통합 후 학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학과 또는 영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③ (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6년 3월 1일부터 항공교통물류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부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 ④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학칙중 제23조, 제26조, 제32조는 2013학번신,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5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8조제5항의 개정 <별표 3>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6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항공정비연계전공을 항공MRO연계전공으로의 명칭 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1.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22조는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6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기초과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기초과목” 이수구분은 폐지

하며, 2017학년도 이전 “기초과목”으로 구분된 교과목은 2018학년도 이후 교과과정에 관련 교과목으로 대체 설정할 수 있다.

67.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학정원표(2000 ~ 2008학년도)

계열 및 학과	학년도							구분	계 열	학부 및 학과	학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 학 계	660	660	660	660	660	600	600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240	240	240	240	240	240	240	공과대학	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240	240
전자·정보통신·컴퓨터공학부	300	300	300	300	300	-	-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300	300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	-	-	-	-	300	300			항공재료공학과	60	60
항공운항학과	60	60	60	60	60	-	-	항공경영대학	이학	항공교통물류학부	60	60
항공재료공학과	60	60	60	60	60	60	60			항공운항학과	60	60
이 학 계	60	60	60	60	60	120	120			사회	상경	항공우주법학과
항공교통학과	60	60	-	-	-	-	-	경영학과	70			110
항공교통물류학부	-	-	60	60	60	60	60	경영학과 (야간)	40			-
항공운항학과	-	-	-	-	-	60	60	인문자연학부	어학	영어학과 (야간)	30	-
상 경 계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영어학과	-	30
경영학과	70	70	70	70	70	70	70			총 계	890	890
경영학과 (야간)	40	40	40	40	40	40	40					
어 학 계	30	30	30	30	30	30	30					
영어학과 (야간)	30	30	30	30	30	30	30					
사 회 계	30	30	30	30	30	30	30					
항공우주법학과	-	-	-	-	30	30	30					
항공우주법학과 (야간)	30	30	30	30	-	-	-					
총 계	890	890	890	890	890	890	890					

입학정원표(2009학년도 이후) <개정 2015.3.1, 2017.3.21., 2017.11.29.>

구분	계 열	학부 및 학과	학년도				
			2009~2014	2015	2016	2017	2018 이후
공과대학	공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240	240	240	240	213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300	-	-	-	-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220	220	220	195
		소프트웨어학과	-	80	77	70	70
		항공재료공학과	60	60	60	60	54
항공·경영대학	이학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90	90	-	-	-
		항공교통물류학부	-	-	84	84	84
		항공운항학과	60	60	60	60	54
	상경	경영학과	110	110	-	-	-
		경영학부	-	-	120	120	107
인문자연학부	어학	영어학과	30	30	-	-	-
자유전공학부			-	-	-	-	50
총 계			890	890	861	854	827

계약학과 입학정원표 <삭제 2014.5.22>

<별표 2>

학부(과)의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표

<개정 2013.5.15, 2013.11.13., 2015.3.1, 2015.12.11., 2016.5.19., 2016.9.29., 2017.2.22., 2018.11.14., 2019.1.2.>

구분	학과명	전공	학위명
공과대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	공학사
		항공시스템공학	공학사
		기계공학	공학사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전자및항공전자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컴퓨터정보공학	공학사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전자및항공전자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공학	공학사
	항공재료공학과	항공재료공학	공학사
	공학융합학부	항공정비시스템융합	공학사
		무인기융합	공학사
자율주행융합		공학사	
항공·경영대학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교통	이학사
		물류	이학사
		항공우주법	법학사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	이학사
		물류	이학사
		항공우주법	법학사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학	이학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	경영학사
		글로벌항공경영	경영학사
	항공·경영융합학부	운항연계	이학사
		조종융합	이학사
		IT-BIZ 융합	공학사/경영학사
		항공경영융합	경영학사
인문자연학부	영어학과	영어학	문학사

학점은행제 수여학위 종별표 <개정 2014.9.17>

전공명	학위별
영어영문학	문학사
법학	법학사
경영학	경영학사

<별표 1-4> 삭제

<별표 1-5> 삭제

<별표 3>

공학교육인증 전공 종별표 <개정 2015.12.11.>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공과대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컴퓨터정보공학심화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심화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심화
	항공재료공학과	재료공학심화

<별표 4>

국제항공교육인증 프로그램 종별표

단과대학	학부(과)	심화전공
항공경영대학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교통관리 프로그램 항공교통시스템 프로그램
	항공운항학과	비행교육 프로그램
	경영학과	항공경영 프로그램

<별지서식 1> <개정 2015.12.11, 2016.9.29., 2018.11.14.>

제 호

학 위 증

학 부 (과)

성 명

생년월일

최우수/우수/우등졸업¹⁾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복수(연계/융합)전공²⁾ :

부 전 공³⁾ :

국제항공교육인증⁴⁾ : 프로그램

수상내역⁵⁾ : 최우수(Summa Cum Laude)/ 우수(Magna Cum Laude)/
우등(Cum Laude) 졸업생

년 월 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 ○ ○ ○

학위등록번호 : _____

1), 5) 우수졸업생에 한하여 표기함.

2-4)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표기함